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53

발의연월일: 2020. 11. 6.

발 의 자 : 정청래 • 이수진비 • 이성만

김승원 • 이수진 • 임오경

김영호 · 송갑석 · 오영환

도종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대학의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있음.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교수 단체의 반발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그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총장 후보자를 교원·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합의 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총장 직선제를 뒷받침 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제2호).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교원의"를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 협의체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대학 <u>교원의</u> 합의된 방	2 <u>교원·직원 및 학생</u>
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
	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 협
	의체의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